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(주) ESG 위원회 규정

제정 2021 년 7 월 22 일

개정 2022 년 12 월 19 일

개정 2026 년 5 월 7 일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'ESG 위원회'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기능)

위원회는 환경(Environment), 사회(Social), 지배구조(Governance)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 사항을 검토·분석하여,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성)

①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
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독립이사가 위원회 위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. (2026.05.07 개정)

③ 위원회는 제 7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독립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 (2026.05.07 개정)

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다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, 그 순위는 위원으로 최초 선임된 일자 순으로 하며, 그 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5 조 (위원회)

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
② 정기위원회는 매 반기 1 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6 조 (소집)

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및 회의장소를 정하고, 늦어도 회의 개최일 7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 7 조 (결의방법)

① 위원회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8 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환경 정책 및 환경경영 활동
2.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책 및 활동
3. 근로자 인권 및 이해관계자 관련 사항

4. 동반성장, 상생 및 CSR 등 사회적 책임 정책 및 활동
5.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정책 및 활동
6. 1억 이상의 사회공헌 집행
7. ESG 전략 및 정책 추진 사항
8. 국내외 주요 ESG 평가결과 등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
9. 위원장의 선임
10. 기타 ESG 관련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9 조 (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)

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 10 조 (통지의무)

위원회는 제 7 조에 따라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의사록)

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, 의견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 12 조 (사무)

위원회의 사무는 이사회 사무국에서 담당한다.

제 13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 년 7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 년 12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 년 5 월 7 일부터 시행한다.
단, 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제 4 조 개정규정은 2026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.